

인천논현 LH16단지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인정업종 확대 · 선착순동호지정 · 선계약후검증]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9. 16.]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논현동 588-2) 창업지원주택(인천논현LH16단지)

- ☐ 금회 공급하는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본 주택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본 주택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는 불가합니다.**
- ☐ 상기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 주요내용]

■ 인정업종 확대

-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인 및 예비 창업인의 **인정업종 확대**

인정업종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소지, 사업장소재지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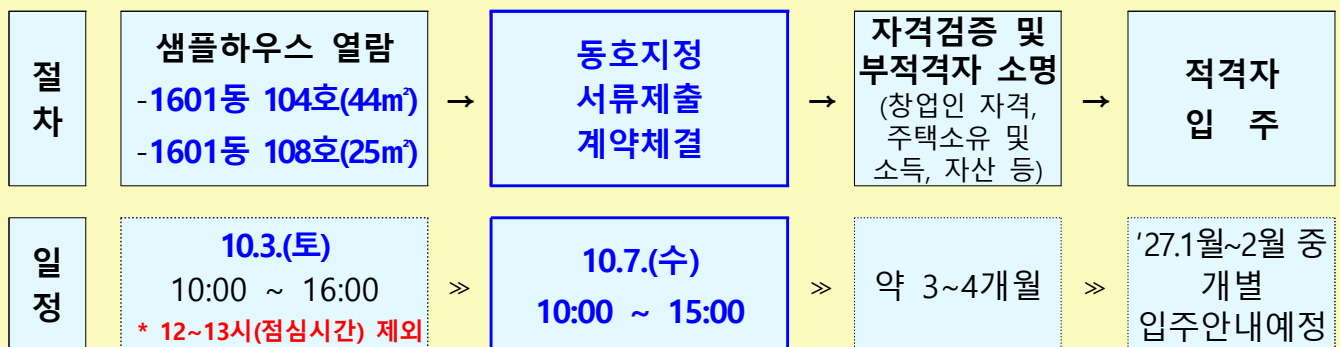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2.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참조

■ 선착순동호지정 · 선계약후검증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자가 계약체결 당일 직접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동호지정은 선착순으로 진행
선계약 후검증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검증을 시행하며, 추후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안내

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지정시간 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당일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계약금(60만원) 입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샘플하우스 열람 [10.3.(토) 10:00 ~ 16:00]

*12:00~13:00(점심시간) 제외

- 샘플하우스 위치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 1601동 104호/108호
- 주택 열람 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열람기간 외에 세대개방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기물 등이 열람자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 우리 공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방식 ※ 「4.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반드시 필독

- 2026.10.7.(수) 당일 해당 장소에 **15:00 이전 도착자에 한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동호지정 시간 : **동호지정 당일 10:00~15:00**
- 계약체결 방법 : 동호지정(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현장계약체결(당일 10:00~15:00)**

당일 10:00시 이전 도착자	- 도착 후 접수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10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 결정 ☞ 당일 10:00 이전 도착자는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당일 10:00시 이후 도착자	- 10시부터 번호표 배부하며,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10:00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이후 동호선택이 가능하므로, 계약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준비사항

- ① **계 약 금** ▶ **60만원** (계약체결 당일 현장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 **현장 현금수납 불가**)
 - ②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2026.09.16.)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5.신청서류] 참조
 - ③ **신 분 증**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추가서류지참 :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계약자가 자격검증 완료 이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 *소명대상자에게는 우편물 및 SMS로 소명대상임을 별도통보하며, 소명안내 우편물 및 SMS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은 '1)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과 '2)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두를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반드시 아래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인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남동구에 추천을 요청하고 남동구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내용은 남동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3)**
- * **창업인 추천자격 외의 임대문의는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5.신청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6.) 현재,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 **인정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2)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6.) 현재, 아래 ①~⑤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6.09.17. ~ 2007.09.16.)**
-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가) 혼인 중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 나)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무주택자)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맞벌이 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7,626,151원 이하	130%
3인	8,168,429원 이하	100%	9,802,115원 이하	120%
4인	8,802,202원 이하	100%	10,562,642원 이하	120%
5인	9,326,985원 이하	100%	11,192,382원 이하	120%
6인	9,906,263원 이하	100%	11,887,516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게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혼인중이 아닌 경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확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 해당함, 자세한 내용은 「7. 유의사항 ■ 최대 거주기간」 참고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 **(창업인 검증)** 창업인 검증은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의 추천서류를 남동구에 추천 의뢰하여 검증합니다.
-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창업지원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공급대상	건설호수	금회 모집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25A/A1	청년 창업인	194	60	25.77	11.96	10.0029	10.4914	58.2243	철근 콘크리트 / 지역난방
25B/B1 (주거약자용)	청년 창업인 중 주거약자	20	5						
44A	청년 창업인	24	3	44.51	20.6574	17.2771	18.1209	100.5654	

공급 형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5A/A1	34,920,000	600,000	34,320,000	162,960	(+) 19,000,000	53,920,000	67,960	10~14
25B/B1 (주거약자용)					(-) 28,000,000	6,920,000	244,620	
44A	60,480,000	600,000	59,880,000	282,240	(+) 33,000,000	93,480,000	117,240	
					(-) 50,000,000	10,480,000	428,070	

- 상기 임대조건은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추후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자격검증에 약3~4개월 소요됨에 따라, **‘27.1월~2월 중 적격자에게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입주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적격자는 입주지정기간(60일) 내에 입주 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하여야 함)
- 모집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창업지원주택 [2.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주거약자’ 란?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5형 주택에는 빌트인 품목(가스쿡탑(2구형), 소형 냉장고, 책상, 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 및 전환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당해단지는 2022년 7월 최초 입주한 단지로 입주자의 퇴거 또는 장기 미임대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금회 공급함에 따라 사용감, 노후화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026.10.7.(수) 10:00 ~ 15:00

일정	절 차	장 소	상세내용
공고일 이후 서류 발급	신청서류(계약) 준비	각 서류별 발급처	- 자세한 서류는 「5.신청서류」 참조 ※ 신청서류 반드시 지참(서류미비시 계약 불가)
10.3.(토) 10:00~16:00	↓ 샘플하우스 열람 *12~13시 점심시간 제외	인천논현LH16단지 창업지원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 1601동 104호/108호	- 방문자확인대장 작성 - 샘플하우스 : 1601동 104호(44㎡) / 108호(25㎡) ※ 지정된 동호 외 열람불가
10.7.(수) 10:00~15:00	↓ 접수대장 작성	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접수처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접수대장 작성 및 서류양식 등 수령
	↓ 동호지정		10시 이전 도착자 접수대장 작성 후 동호지정 순번 추첨 10시 이후 도착자 도착순서대로 번호표 배부 -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동호지정 후 청약신청서 작성
	↓ 계약금 입금		- 은행·ATM·스마트폰 통해 입금 (현장 현금수납 절대불가) -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60만원 입금 (입금자명에 계약자본인 성명 기재) 예시) 홍길동
	↓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내역확인 및 서류 완비 시 계약가능
약 3~4개월	↓ 자격검증	남동구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신청자의 입주자격 적격여부 확인 (창업인 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
약 2주	↓ 부적격자 소명	SMS · 우편안내 (부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 소명 ※ 소명 완료한 경우에 한해 입주 가능
↓ '27.1월~2월 중 개별입주 안내예정	↓ 잔금납부 및 입주	본인 지정 동호	-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입주지정기간 60일(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10:00 이전 도착자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며, 접수대장에 인적사항 기재 후 10시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10:00 이후 도착자	10시부터 도착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금회 공고는 선착순 동호지정 마감 시, 별도의 예비순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15:00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신청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가탈 등으로 본인의 신청접수·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신청접수·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신청접수·동호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 오전 10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번호표(순번)는 부여받은 당일 신청접수·동호지정 마감시간까지만 유효하며, 신청접수·동호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계약자) 본인이 신청서류(「5. 신청서류」 참고)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 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해당 동·호에 대해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공급형별 구분 없이 6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당일 지정시간 내(10:00~15:00)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당일 지정시간 내에 계약금 미입금 시 동호지정은 취소되며, 동호지정 이후 동호변경 불가)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창업인 자격,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계약자가 자격검증 완료 이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자격검증에 약3~4개월 소요됨에 따라, '27.1월~2월 중 적격자에게 개별입주안내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입주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적격자는 입주지정기간(60일)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하여야 함)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첨부파일 참조)
- 해당단지 기존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건 입주 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SMS,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최종 적격자 안내 및 입주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제출서류 목록 * 공통1,2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 공통1은 남동구에 창업인 검증 요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공통2는 주택 · 소득 · 자산 등 검증을 위해 LH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공 통 1	입주 추천 신청서 *양식1-1	• (대상자) 창업인 전원 •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 신청서	남동구 양식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2	• (대상자) 창업인 전원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남동구의 추천 신청·접수가 거부됨	
	사업계획서 *양식1-3	• (대상자) 예비 창업인 • 예비창업인만 작성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상자) 창업인 전원 • 예비 창업인의 경우 선계약체결 이후 2026년 12월 2일까지 LH에 제출 (제출처는 예비창업인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예정, 미제출시 계약이 해지됨)	관할 세무서
	주업종코드확인서	• (대상자) 창업인 전원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기업) - My홈텍스 - 기타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클릭 - 상세보기 클릭 - 화면출력	홈텍스
공 통 2	선계약 후검증 약약서 *양식2-1	• ‘선계약 후검증’ 모집방식 관련하여 향후 부적격자 판정 시 해약에 대한 동의 및 약약사항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	LH 양식 (신청자 작성)
	공급신청서 및 신청자격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양식2-2	• 공급형별 선택 및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 창업인기준 및 무주택·소득·자산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미충족시 계약 취소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	LH 양식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LH) *양식2-3	• (대상자) 해당 세대에 속하는 세대구성원 전원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양식2-4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날인)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2-5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가능한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해 당 자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내역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세대분리, 미혼 ,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신청자세대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신청자 기준 타세대원과의 관계확인이 안되는 경우거나, 동거인 세대인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통장 사본	※ 신청자(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필요 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바람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내역전부표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행정 복지 센터
해 당 자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내역전부표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방보훈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0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신청접수 · 계약관련 필수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계약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계약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계약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분이어야 함(대리발급분 인정불가)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계약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을 시 신청·계약 불가

6.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确定为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에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총 자산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동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	- 지방세정 자료

		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7.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입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단, 소득·자산 등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재청약 기준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 유형에 해당합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 갱신계약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필요시 자격확인을 위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해 서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최초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 후 창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무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1회 재계약 허용 후 다음 회차 갱신시에 창업인 자격 미충족 시 갱신계약은 불가하나, 창업인 자격을 회복했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당해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의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 금지 및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만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자동차 등록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 해당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 당해단지는 2022년 7월 최초 입주한 단지로 입주자의 퇴거 또는 장기 미임대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금회 공급함에 따라 사용감, 노후화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여건 - 당해지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동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철도 등) 및 구조물(보도, 버스환승차로,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주변시설물 및 구조물로 인한 소음,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및 각 개발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도심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당해 지구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지구 서측은 인천남동고등학교, 동측은 30m도로, 남측은 25m도로 및 육교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및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6층 규모입니다. - 본 단지는 지상1층~지상6층(행복주택, 2개동), 지상 및 데크주차장, 창업지원시설(1602동 1층, 별동 2~3층), 근린생활시설(별동 1~2층),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내에 위치한 창업지원시설은 지자체(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별도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붕은 전체 동 평지붕으로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하였습니다. - 주거약자 세대는 1602동의 1~2층(25B, 25B1형)에 위치하고 욕실문 규격 확대, 좌식싱크대,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됩니다. - 전 동 아파트 복도 외부 면으로 창호가 설치되며, 복도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저층세대에는 방범창살이 설치되지 않으며, 각 세대 발코니에는 입면분할 창으로 스테인리스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복도에 면한 침실(이중창)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각 동 옥탑 층에는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추후 팸플릿의 단지조감도에 표시되지 않은 이동통신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안테나)는 지상 및 데크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 지상파 수신안테나, 위성안테나(1601동) 및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추후 입점 되는 영업업종에 따라 음식냄새 및 소음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상가의 에어컨 설치(실외기 등)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시스템(차량번호 인식)이 적용, 설치됩니다.
- 데크주차장에 전기자동차용 급속(50kW), 완속(7.7kW)충전기가 각 1개소 설치되며, 이동식 충전기(3KW)용 콘센트는 4개소 설치됩니다.(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총 6개소 설치)
- 주차구획(지상 및 데크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며 내부 주차공간 높이는 2.1m입니다.
-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데크주차장 환기를 위해 데크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단지 배치 상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분산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수취함은 1층에 위치하며, 무인택배보관함은 경비실 옆 무인택배실에 설치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각 동 출입구 근처에 위치할 예정이며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수목 식재 등에 따른 부분적인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보도와 인접한 경우 사생활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및 태양광 전지판 등의 시설물이 각 동 최상층 옥상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일부 및 체육실 등의 부대시설 일부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역주민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 발코니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노출된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발코니에는 화재 시 옆 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통로(비상탈출용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대피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천장 및 발코니(벽)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며, 입주 시 파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는 비난방 공간으로 결로 저감재가 시공되나, 과도하게 습한 실내 생활환경 및 환기가 부족한 경우 및 당해 지역의 특성상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입주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에 결로저감재를 시공함에 따라 부착폭 만큼 발코니의 일부 면적이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난간이 없으며, 입면분할창의 하부 접합유리창이 발코니 난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거실과 발코니 벽면 사이에 에어컨 배관용 배관구가 상, 하부 2개소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에는 에어컨실외기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며, 우수배관은 세탁실에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마감이 없습니다.
-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5타입 세대에 빌트인 가스쿡탑(2구형)과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되며, 이외 타입의 세대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원격검침용 급수, 급탕 미터기함 및 난방용 열량계는 복도 PD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 및 세대 침실문은 ABS 재질입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시스템 욕실(UBR)로 시공되며 그에 따라 바닥 난방코일이 없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합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된 위치에 설치함에 따라,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매입형 다운라이트, 44㎡ 타입에만 적용))
- 싱크대(개수대)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급수, 급탕분배기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세대통합관리반(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설치위치는 25㎡ 타입의 경우 세대 현관 신발장 측면, 44㎡ 타입은 신발장 맞은편 벽체에 매입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대응 등 환기성능 향상을 위한 세대내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각종 창호류, 주방가구, 신발장,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시설계획, 내부구조 및 마감 등은 향후 사업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태양광 모듈 전지판 설치 등은 낙하위험성 등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약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인 관리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자격검색 처리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안내드립니다.
-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가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될 수 있으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에 안내드립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비디오폰에서 설정)	전체 주거약자용 주택 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단차 없애기 출입문 방향 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주방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거실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높이조정	
기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아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하거나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내인천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체결기간 내 미신청시 설치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검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2) 폰تان 수술을 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탈출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3)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 4)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체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체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부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체장을 이식받은 사람

17.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8.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내용	적용 여부	비 고
건축 부분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외기 직접 면하는 창외기밀성능 1~5등급	적용	
기계 부분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KS인증 또는 KS규격 효율이상 펌프	적용	
	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적용	
전기 부분	고효율 변압기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최저소비효율기준 조명설치	적용	
	조명설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제외 (60㎡이하세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논현4 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우석신도시(311-81-08750), (주)우석건설(307-81-06689), 티오피종합건설(주)(141-81-06871)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전화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임대문의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문의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3) ※ 창업인 추천자격 외의 임대문의는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바랍니다.	
당첨자 ARS	1661-7700	
청약 및 계약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등(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LH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